

##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관한조례(안) 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7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 
위하여 관련조례 제정

4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구성 :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 
구성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

2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
3. 당해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
4. 지방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

나. 위원의 임기 : 지방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 
해지

다. 회 의 :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 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라. 후보의 추천 :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 
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 
자를 지방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, 도지사는 추천된  
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  
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요구 가능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 
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1999년 1월 1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(법률 제5708호)  
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 
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 
그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
정하도록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##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

- 조례제정이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공사의 장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
-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고 도지사, 도의회, 당해공사 이사회 추천 각 2인과 공사의 감사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위원수나 인적구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
- 위원장 선출방법도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.
- 회의운영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도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사료됩니다.

## 붙임

-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※ 제1호의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국민 국민이 아닌 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상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## 붙 임

○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(안)